

2010. 5. 20.

발 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이규학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노영보, 권순익, 조성민 변호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15 한국타이어빌딩

수 신: 제28회 총회대표

제 목: 2010. 5. 27.자 총회의 불법성에 대한 안내

1.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지난 2010. 5. 11. 감리회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발표된 2010. 5. 27.자 총회와 관련하여, 발신인을 대리하여 본건 통지문을 발송합니다.
3. 교리와 장정 [411]단 제117조에 의하면, 총회는 2년에 1회 10월 중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재선거를 통한 감독회장 선출시까지지는 총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감독회장의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만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는 위 총회를 직접 소집하거나 위 총회의 소집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는 직무대행자의 총회 소집 권한에 이견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와 같은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익도 없는 총회를 열기보다는 법원이 명령한 감독회장 재선거 실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최근 임영훈 감독등이 위 총회 소집에 동의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10. 5. 27.로 예정된 총회는, 교리와 장정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의 소집 내지 소집에 대한 동의 없이 무권한자에 의해 개최되는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4. 또한 총회는, 총회의 의장인 동시에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행정수반인 감독회장에 의해서 소집되어야 하므로, 총회가 소집되는 경우에 그 소집절차 또한 마찬가지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는 어떠한 총회의 소집통지 내지 소집광고도 낸 적이 없습니다. 전직감독협의회 등의 명의로 2010. 5. 11.경 발송된 총회 소집 통지 또는 광고는 무권한자에 의한 것으로, 그 자체로 적법한 총회 소집 통지가 될 수 없으므로, 2010. 5. 27. 총회의 소집통지에는 중대한 흠결이 있습니다. 한편, 교리와 장정 [411]단 제117조에 의하면, 총회의 소집일시와 장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독회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총회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총대들이 임의로 결정하여 감독회장 직무대행자에게 통보한 것이므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10. 5. 27.자 총회는 소집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5. 이와 같이 2010. 5. 27.로 예정된 총회가 그 실체적 및 절차적 위법성으로 인해 무효라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총대들이 계속해서 불법 총회 개최를 시도하는 것은, 이미 법원의 판결에 의해 수차례 감독회장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특정 인물을 감독회장으로 선출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입장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6. 이에 대하여 위 총회를 강행하려는 일부 총대들은, 위 총회의 법적 성격이 비상총회에 해당한다고 강변하면서, 과반수의 연회 및 과반수의 총대의 결의만 있으면 총회의 소집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교리와 장정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교리와 장정 어디에도 평상총회와 비상총회를 구별하거나 비상총회의

경우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누구나 임의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회 및 총대의 과반수 결의(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과반수를 확보하였다는 것도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는 총회가 소집된 다음 총회에 부여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에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지, 총회 소집 여부부터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를 인정할 경우에는 총대 과반수만 확보하면 언제든지 누구라고 총회를 개최하여 감리회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교리와 장정에서 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조항을 둘 이유도 없습니다. 감리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연회나 총대의 과반수로 총회를 소집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고, 일반 사회법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회법에서는, 회의 소집권을 가진 자가 회원들의 소집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 회원들이 법원에 회의 소집의 허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재판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점만 보더라도 소집권자의 소집이 없이 과반수의 이름을 빌어 임의로 소집된 위 총회가 불법, 무효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또한, 총회가 감리회의 주요 정책과 주요 행정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회의체라 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총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년 가까이 계속되어온 감리회의 직무대행체제는 2008. 9. 25. 시행된 감독회장 선거의 위법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재선거를 통해 그 하자를 치유하면 될 것이고(또한 이것은 법원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이유이자 감독회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별도로 총회를 소집할 이유도 없습니다. 일부 총대원들이 총회 개최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행정 복원'도 재선거 실시로 감독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일부 총대들이 과반수 결의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2010. 5.

27.자 총회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교리와 장정 상의 총회 소집에 관한 조항을 전부 무시하는 것으로 총회만능주의에 빠진 것에 불과합니다.

7. 이 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 5. 27. 예정된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이고,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총회 소집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절차적 흠결이 있으며, 불순한 목적에서 비롯된 불법적인 것이므로, 위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전부 무효이고, 어떠한 결의도 감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대들께서는 위 총회에 참석하지 마시고, 2010. 5. 18. 후보자등록공고로 개시된 감독회장 재선거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10. 5. 20.

법무법인(유)태평양

위 발신인들의 대리인

담당변호사 노 영 보

담당변호사 권 순 익

담당변호사 조 성 민